

의안번호	제 360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발 의 자	박문희 의원 등 6인
발의연월일	2020년 3월 4일

충청북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박문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60
----------	-----

발의연월일 : 2020년 3월 4일

발 의 자 : 박문희·박우양·임영은·이상식
이상정·이상욱 의원(6인)

1. 제안 이유

- 우리도의 드론산업을 육성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하는 도지사의 책무 (안 제3조)
-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 사업의 위탁 (안 제7조)
-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 등(안 제8조)
- 드론산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한 업무의 위탁 및 지원 (안 제10조)

3. 조례안 : 불 입 4. 관계법령 발췌 : 불 입

5. 예산조치 : 34,250백만원(국비 16,000, 도비 10,250, 시군비 8,000)

6. 관련부서 협의 : 신성장산업국 산업육성과와 협의

7. 입법예고 : 2020.2.7 ~ 2020.2.26.(20일간, 특이의견 없음)

충청북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드론산업을 육성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를 말한다.

가.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나.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무인항공기

다. 그 밖에 원격·자동·자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항행하는 비행체

2. “드론시스템”이란 드론의 비행이 유기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드론, 통신체계, 지상통제국(이·착륙장 및 조종인력을 포함한다), 항행관리 및 지원체계가 결합한 것을 말한다.

3. “드론산업”이란 드론시스템의 개발·관리·운영 또는 활용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

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① 도지사는 드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드론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드론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2. 드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대상 안전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전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해당 안전의 이해관계인인 경우
3. 그 밖에 해당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전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그 위원을 해당 안전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전의 심의·의결에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수당) ①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지급은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따른다.

제7조(사업시행 대상) 도지사는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게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도가 출연·출자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3.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고등

학교, 대학 및 직업전문학교

4. 그 밖에 도지사가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제8조(각종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출자·출연·보조·융자 등을 할 수 있다.

1. 애로기술지원, 신기반기술개발, 시제품 및 신상품개발 등 상용화 기술개발

2. 드론산업 관련 유망기업·연구소 유치 및 육성

3. 드론산업 관련 집적화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

4. 기술인력 양성, 창업보육, 생산지원 확충사업, 시험·인증사업

5. 드론 관련 클러스터, 산업단지의 조성·분양 및 임대 관련사업

6. 드론 관련 전시회, 학술회의와 각종 행사의 개최 및 유치

7. 드론산업의 교육, 기술지도, 육성 및 보급, 인증, 시험 등 인프라 조성 및 운영

8. 그 밖에 도지사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드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드론 관련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유치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

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확산을 위한 연구·개발
3. 기업 등으로 기술이전 및 기업 기술지원과 자문
4. 그 밖에 도지사가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업무의 위탁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드론산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해 제8조의 사업을 제7조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위탁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명령이나 처분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도지사는 제6조의 기관 등에 사업을 위탁하거나 경비를 지원한 경우 관련 서류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3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해 관련 기관 등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 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도지사는 드론산업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단체, 법인, 외국인 등을 포함한다)에게 「충청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항공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공기“란 공기의 반작용(지표면 또는 수면에 대한 공기의 반작용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뜰 수 있는 기기로서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음 각 목의 기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를 말한다.

가. 비행기

나. 헬리콥터

다. 비행선

라. 활공기(滑空機)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초경량비행장치의 기준) 법 제2조제3호에서 “자체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무인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동력패러글라이더 및 낙하산류 등을 말한다.

1. ~ 4. (생략)

5. 무인비행장치: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행장치

가. 무인동력비행장치: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나. 무인비행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20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

충청북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드론산업은 정부의 미래먹거리 8대 선도산업으로 제도정비, 인프라구축, 규제완화 등 다양한 정책추진에 따라 지역 드론산업 생태계의 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발굴·지원하여 드론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비용발생 요인

- 충청북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7조 드론산업 육성 지원 사업

3. 관련 조문

- 안 제7조(각종 지원사업)

4. 비용 추계결과

- 가. 재정수반요인 :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비
-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으로 함
- 다. 추 계 결 과 : 34,250백만원(국비 16,000, 도비 10,250, 시군비 8,000)
- 라. 재원조달방안 : 국·도·시군비 등

5. 연도별 비용추계서(세출)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드론산업육성 등 4개 사업	34,250	250	8,500	10,500	10,500	4,500

※ 단위사업별 비용추계내역 : 별첨

드론산업 육성 단위사업별 5개년(2020~2024) 투자계획

사업명	재원별	사업비(천원)					
		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4개 사업	합 계	34,250,000	250,000	8,500,000	10,500,000	10,500,000	4,500,000
	국비	16,000,000	0	4,000,000	5,000,000	5,000,000	2,000,000
	도비	10,300,000	300,000	2,500,000	3,000,000	3,000,000	1,500,000
	시군비	8,000,000	0	2,000,000	2,500,000	2,500,000	1,000,000
드론테스트 베드	소 계	20,000,000	0	8,000,000	6,000,000	6,000,000	0
	국비	10,000,000	0	4,000,000	3,000,000	3,000,000	0
	도비	5,000,000	0	2,000,000	1,500,000	1,500,000	0
	시군비	5,000,000	0	2,000,000	1,500,000	1,500,000	0
드론산업 및 전문 인력육성	소 계	1,0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국비	0	0	0	0	0	0
	도비	1,0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시군비	0	0	0	0	0	0
드론산업 고도화지원	소 계	1,250,000	5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국비	0	0	0	0	0	0
	도비	1,250,000	5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시군비	0	0	0	0	0	0
드론거점 기관구축 (신규추진)	소 계	12,000,000	0	0	4,000,000	4,000,000	4,000,000
	국비	6,000,000	0	0	2,000,000	2,000,000	2,000,000
	도비	3,000,000	0	0	1,000,000	1,000,000	1,000,000
	시군비	3,000,000	0	0	1,000,000	1,000,000	1,000,000